

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# 검 토 보 고

기 획 경 제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#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8. 4. 16

나. 회부일자 : '98. 4. 16

3. 제안이유

- 고등교육법 제정으로 학교명칭을 대학자율로 사용하도록 됨에 따라
- 사용대학 명칭을 도립대학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전문대학을 대학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타 대학과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함

4. 주요골자

- 조례제명을 “충청북도립옥천대학설치조례”로 함
- 고등교육법과 부합하는 대학의 설치목적 변경(조례 제1조)
- 대학의 명칭을 “충북도립옥천대학”으로 함 (조례 제2조)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고등교육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과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명칭 및 본대학의 설치목적을 변경하여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이며

주요골자에 있어서는

첫째, 조례제명을 충청북도립옥천대학 설치조례로 하고

둘째, 대학의 설치목적중 ‘중견직업인’을 ‘전문직업인’으로 하며

셋째, ‘옥천전문대학’을 ‘충북도립옥천대학’으로하여 도립대학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타 대학과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